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곽향기, 김경훈, 김길영, 김영옥, 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 박춘선, 신동원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윤, 이봉준, 이숙자, 이영실, 이은림, 이희원, 임춘대, 정준호, 최민규, 허훈, 홍국표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‘연차별 가로수계획’을 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‘가로수기본계획’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지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항제5호)
- 나.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규정(안 제4조제2항)
- 다.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진단조사 실시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조성 및 정비 계획”을 “관리계획에 관한 지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년 이내에 세부계획”을 “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4

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관리청”이란 <u>별표1</u>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</p> <p>3. ~ 8. (생 략)</p> 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연차별 가로수 <u>조성 및 정비 계획</u> 등</p> <p>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<u>1년 이내에 세부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별표 1</u>----- -----.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관리계획에 관한 지침</u> ----- ② ----- ----- <u>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

<신 설>

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
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
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
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
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제3항

나. 전제

-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는 2024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예산서 활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358,300천원(연평균 71,66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	소계(a)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
※ 2024년 서울시 사업예산서 활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희선
 추계세제팀장 이정수
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 ☎ 02-2180-7953
 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≙ 358,300천원(연평균 71,660천원)
 = 71,660천원 × 5년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	소계(a)	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수입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	71,660	71,660	71,660	71,660	71,660	358,300

※ 비용은 2024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

[붙임 1] 2024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1.1. ~ 12.31.
- 사업내용 : 토양 시료채취, 토양오염 우려기준(23개 항목) 초과여부 조사
- 조사대상 : 210개소 선정하여 조사 실시
 - 공장, 토지개발지역, 폐기물 관련시설, 지하수 기준 초과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
 - 교통관련시설인 정비소, 세차장 및 차고지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
- 조치사항 : 기준초과지역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
- '24년도 소요예산(안) : 71,660천원